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69 발의연월일: 2024. 7. 8.

발 의 자: 장종태·장철민·박용갑

박정현 • 박지원 • 황정아

문진석 • 이재관 • 박민규

김 윤·조승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기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바 있음.

그런데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이후 3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1년 이 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하여 그 내 용을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,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인 이전대상공공기관이 없는 기존

혁신도시에 대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·공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(안 제2 6조).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 제목 중 "지정"을 "지정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, "지정 등"을 "지정, 이전대 상공공기관 결정·공표 절차 및 방법 등"으로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전대상공공기관 결정 및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) 제26조의 개 정규정 시행 당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인 이전대상공공기관이 없는 혁신도시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혁신도시의 <u>지정</u>) ① ~	제26조(혁신도시의 <u>지정 등</u>) ①
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
	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
	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
	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
	공공기관을 결정하고 그 내용
	을 공표하여야 한다.
<u>④</u> 제1항부터 <u>제3항</u> 까지에서	<u>⑤</u>
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의	
지정 신청 및 <u>지정 등</u> 에 필요	<u>지정, 이전대상공</u>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	공기관 결정・공표 절차 및 방
다.	법 등